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 0 2 4 . 6 . 1 2 . (수)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624

제출일자 : 2024. 5. 30.

회부일자 : 2024. 6. 12.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현주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최덕규 의원 외 17인

2. 제안 이유

- 코로나19 이후 택배와 배달문화의 급속한 증가로 포장재 폐기물이 급증하여 이에 대비한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에 관한 정책 필요성의 증대
-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계획 수립·시행과 재정지원 방안 등 체계적인 포장재 사용의 저감과 재사용 활성화를 통해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관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포장재의 사용 저감과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라.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사업(안 제5조)
- 마.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포상(안 제6조~제7조)

4. 참고 사항

-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첨부
- 나.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라. 해당부서 의견 : 별도의견 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바.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검토 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한국통합물류협회(KILA) 자료에 따르면, 1992년 우리나라에 택배 서비스가 등장하였으며,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은 2016년 20억 상자를 돌파하고, 2021년에 36억 상자로 급증하였음.
- 택배 포장재를 줄이기 위하여 2022년 4월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제품포장규칙”이라 함)을 개정하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고, 2024년 4월 30일부터 제품포장규칙이 시행됨(1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 계도기간 2년, 매출 500억 미만 업체 제외).
- 제품포장규칙에 따르면 택배 포장공간비율은 50%이하로 제한되며(단,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cm이하와 해외직구는 예외),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을 부과함.

- 이러한 실정에서 포장재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포장재의 사용 저감과 재사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의 필요성의 인정됨.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제정안은 본칙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음.

〈제정안의 구성 체계〉

조항	조제목	조항	조제목
제1조	목적	제6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7조	포상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부칙	시행일
제5조	사업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1조(목적)**는 경상북도민의 환경권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제정안의 목적으로 규정함.
- **안 제2조(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음.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포장재 사용 저감과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등)는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사업)는 도지사가 포장재의 사용 저감·재사용 관련 시설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재사용 공급,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장재 저감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6조(실태조사)는 도지사가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포상)는 도지사가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의견

- 환경부와 대형 유통기업 19개사(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택배사)가 지난 3월 8일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포장재로 인한 환경오염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제정안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이 없어 조례 제정에 따른 적법성에 문제가 없으며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 제5조(사업)
 - 도지사는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장재의 사용 저감과 재사용 관련 시설 및 기술개발·보급
 2. 포장재의 회수 및 세척 등을 통한 재사용 공급
 3.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 제정안은 체계적인 포장재 사용의 저감과 재사용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의 일부 수반이 발생함
- 조례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었고 해당 시군과 협의 및 예산편성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규모가 결정되므로 소요 사업비 예측이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정책과 지방환경주사보 이재혁 (054-880-3539)



경 상 북 도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

1. 환경정책과-13016(2024.5.28.)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포장재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포장재의 저감과 재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술개발 및 보급, 회수·세척 등을 통한 재사용 공급, 교육 등 관련사업 추진에 따라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임의적 특성과 사업의 종류, 내용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추계를 위한 사업 규모,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의안 내용이 선언·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 • 다만, 해당 조례안의 시행 후 조례에 근거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재정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예 산 담 당 확 각

주무관	윤종모	예산총괄팀장	권미숙	예산담당관	전결 2024. 5. 29. 윤희란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6778	(2024. 5. 29.)		접수	환경정책과-13036 (2024. 5. 29.)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풍천면 도청대로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4	팩스번호	054-880-2369	/ jackof2pro@korea.kr	/ 비공개(5)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화력지입니다.					

관계법령 발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產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